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2022. 11. 25.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9호로 2022년 11월 10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2023년~2026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1. 10. ~ 11. 16.):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9대 의원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는 조례 제3조(월정수당)와 함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을 2,845,44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정함.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9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이므로 법률상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 ⑨ (생략)